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2177호
-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
- 발의일자 : 2021년 02월 05일
- 회부일자 : 2021년 02월 09일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체육 관련(생활체육진흥·체육복지 진흥·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회의 법인설립 및 운영비 보조 등을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체육회를 법정 법인화하고자 함(안 제20조)
-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의견

가. 제정 목적

- 서울시는 체육과 관련한 개별 조례를 통해 체육활동 진흥 및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이 있음.

동 제정안은 이 중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을 육성·지원하고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 조례, 체육인 인권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21.6.9.시행)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회 법인 설립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제정의 필요성

- 서울시는 시체육회와 기능과 조직이 유사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관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96)한 이후, 별도의

조례나 규정을 통해 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지 않았으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21.6.9.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19.8.6.) 등을 근거로 지방체육회의 법인설립과 시도체육회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17개 시·도 중 서울과 경남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체육진흥 조례를 통해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생활체육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조례, 체육인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체육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주요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 안 제2장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안 제5조부터 제14조), 안 제3장 체육진흥(안 제15조부터 제22조), 안 제4장 체육인 인권(안 제23조부터 제27조) 및 3개의 부칙을 규정함.

- **안 제1장 총칙 중 안 제1조(목적)**에서 동 조례의 목적을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으로써 하고 있음.

안 제2조(정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 조례, 체육인 인권조례 등에서 사용한 용어를 준용하여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 제4조(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장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는 안 제5조(설치), 안 제6조(기능), 안 제7조(구성), 안 제8조(임기), 안 제9조(직무), 안 제10조(회의), 안 제11조(위원의 해촉), 안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13조(간사 등), 안 제14조(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를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협의회는 지자체의 장, 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위원(7명~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개정('21.6.9.시행)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전 법에서는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고, 조직 및 운영 필요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지방체육회의 감독기관으

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것임.

또한 협의회 관련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울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따르고 있음.

- **안 제3장 체육진흥**에서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를 통합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되었던 생활체육 진흥 사업(안 제16조), 장애인체육의 진흥 사업(안 제17조)을 나열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전문체육의 진흥)에서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관련 단체 육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안 제18조(재정 지원)은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의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가 시행됨에 따라 민선 체육회장이 선출되었고 이후 지방체육회의 지위와 재정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21.6.9.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이 동 제정안에 반영된 것임.

안 제20조(법정법인화)는 서울시체육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체육회(서울시체육회)의 법정법인화는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법인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는 것임.

개정 전 법에서는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만을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산하 경기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등을 통합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회·지부”로 규정하였음. 법 개정을 통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독립성 및 위상이 강화되고 통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병렬적인 위상을 갖는 별도의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됨.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체육회는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반면, 같은 법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를 근거로 지방장애인체육회 법인 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현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회장직도 서울시장이 겸직 중임.

<시체육회 법정법인화 관련 주요 쟁점>

○ 기관 측면

- 대한체육회 서울지회, 공직유관 단체(연간 지자체 10억원 이상 보조 단체)
- 서울시체육회의 정관(각종 규정 포함) 및 예산 지원 기관이 달라 운영 상 혼란이 있음
 - 대한체육회 지회로 정관 승인 및 임원 인준 등을 받아야 하지만, 행·재정 지원 미약
 - 공직유관단체('20년 市 보조금 약 642억원)로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 '20년 세입 예산 약728억원 중 市 보조금은 642억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음

○ 법적 측면

- 임의 단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음
 - 임의단체로 법률상 권리 및 의무 주체가 불분명
 -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서울시는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음(의무사항 아님)

- 안 제4장 체육인 인권에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의 기본계획 수립, 체육인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 마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체육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로 제정('20.10.공포)하였으나 동 제정안을 통해 통합 운영될 예정이며 현재 경기도, 대구, 대전, 인천 등 8개의 시도에서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있음.

- 안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 및 안 제20조는 근거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동 제정안으로 통합되는 「서울특별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조례」를 폐지하도록 함.

라. 종합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생활체육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 조례, 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입법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21년 7월 9일 시행을 앞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시장과 시 체육회 회장을 포함하여 구성된 체육진흥협의회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권고'에 따른 시도체육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견고히 하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지혜	02-2180-8117

발의개요

- 안 건 명: 의안번호 2177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
- 발 의 자: 김소영 의원(민생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비례)
- 발의일자: 2021. 2. 5.(금)
-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체육 관련(생활체육진흥·체육복지 진흥·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체육회의 법인 설립 및 운영비 보조 등을 명문화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제14조까지)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체육진흥 및 자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서울특별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명문화(안 제18조)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지방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 명문화)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를 근거로 서울특별시체육회를 법정법인화(안 제20조)
-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3조부터 27조까지)

부서 검토의견 : 『원안가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21. 6. 9. 시행)으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서울시체육회 법인 설립 등을 조례로 정하고,
- 개별 조례(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 조례, 체육복지 진흥 조례, 체육인 인권 조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바,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동의함